



(auri)



No. 37

2015.09.18

# 한옥정책 브리프 hanok policy brief

## 한옥주택 점검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점검 결과분석

심경미 부연구위원, 진태승 연구원, 고영호 부연구위원

### 요약

- 기존의 한옥주택은 노후화 및 변형이 심하나 공공차원의 제도적 관리 수단은 부재한 실정으로 시·도 차원에서 한옥주택의 점검제도를 도입하여 건축물 상태별 관리 및 지원 정책을 체계화 할 필요
- 한옥주택 점검을 위한 세부기준과 점검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서울 경복궁 서측과 수원 화성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점검을 실시하였음
- 시범점검 결과 서울 경복궁 서측 내 한옥주택은 안전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므로 부분수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, 수원 화성 내 한옥주택은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열악하여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보수와 전면수선 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며, 공통적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창호 및 지붕 수선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

### 정책제안

- 시·도는 「한옥 등 건축자산법」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옥주택 점검제도를 도입하고, 점검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중점관리 방향과 세부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한옥주택의 점검을 원활히 시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수선 상담 및 긴급 보수를 지원하는 등 점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자자체 내 한옥전문가가 포함된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할 필요

# 1. 한옥주택 점검제도 도입의 필요성

## ■ 한옥주택은 노후화 및 변형이 심하거나 공공차원의 제도적 관리 수단은 부재

- 기존의 한옥은 1900년대 초·중반에 건축된 것이 대부분으로 특히 주택의 경우 다중이 용시설에 비해 수선 빈도가 낮아 노후화가 심하며 소유자 및 거주자의 임의적인 개량으로 인해 한옥의 전통적인 특성이 훼손되고 있음
-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건축법」, 「주택법」 등에 따라 공공차원에서 건축물의 안전·성능에 대한 정기점검 및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규모 한옥(단독주택)은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
- 한옥주택은 생활공간의 효용성과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유지해야 하므로 일반건축물과 달리 소유자나 관리자가 아닌 공공적인 차원에서 안전·성능 뿐 아니라 한옥의 전통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

## ■ 시·도 차원에서 한옥주택의 점검을 시행하여 체계적인 보전·관리 정책 추진 필요

- 현행 지자체의 한옥지원제도는 한옥의 소유자가 수선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심의하여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방향적인 형태로 체계적·효율적 관리 및 지원에 한계
- 한옥주택의 점검은 수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결함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선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비용으로 한옥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, 지자체 차원에서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세부지원방안 마련 가능
- 한옥주택의 점검은 제도의 정합성을 위해 「한옥 등 건축자산법」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·관리 주체인 시·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

## ■ 한옥주택 점검제도 운영을 위해 세부점검기준 마련 필요

- 한옥은 일반건축물과 구조, 형태 등이 다르고 점검 시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전통양식의 관리 상태도 파악해야 하므로 별도의 점검기준이 필요
- 한옥주택의 점검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점검 시 사용할 점검항목 및 평가 기준, 점검자의 자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함

※ 이 글은 심경미 외(2014), 「한옥주택 유지·관리를 위한 점검 기준 및 실행방안 연구」 중 일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

## 2. 한옥주택 점검항목 및 평가기준

### ■ ‘안전성능’과 ‘전통양식’의 관리 상태를 구분하여 점검항목 구성

- ‘안전성능’ 부문의 점검항목은 한옥주택의 주된 결함 부위 또는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부위별 점검방식인 목조건조물 문화재 정기조사 서식을 기반으로 세부점검내용을 추가
- ‘전통양식’ 부문의 점검항목은 국가한옥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한옥분포조사<sup>1</sup>의 등급 판별 기준을 토대로 구조나 외관상 한옥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구성

표 1. 안전성능 부문 점검항목

구분	점검항목	점검내용	점검결과					비고 (결합부위)
			A	B	C	D	E	
안전성능	기단부	기단	지반 침하 여부					
			기단 손상(침하, 균열, 배수펌 등) 여부					
		계단	계단 손상 여부					
주 부	초석	초석(고막이)	초석 손상 여부					
			초석의 이동·침하, 기단과의 안전 여부					
	마루	(마루/구들)	(대청·툇·쪽)마루 등의 손상, 부후 및 충해 여부					
			기둥의 물리적 손상, 부후 및 충해 여부					
	기둥	기둥의 물리적 손상, 부후 및 충해 여부						
			기둥의 기울어짐, 결구부의 이상 여부					
	인방·창방(수장재)	수장재의 기울음, 물리적 손상, 부후 및 충해 여부						
			외벽 손상 여부					
	벽체	내벽 손상, 결로 및 곰팡이 발생 여부						
		지붕, 기둥, 바닥, 창호, 수장재 등과 접촉되는 부위의 벌어짐이나 부재의 이탈 여부						
	창호/난간	창호, 난간의 손상, 창호의 단열성능						
	공포(해당하는 경우)	공포(결구부)의 손상, 부후 및 충해 등 여부						
지붕부	도리·보(수평재)	수평재의 손상, 결구부의 이상 여부						
		천장	천장 목부재 및 마감재의 손상 여부					
	서까래·부연(처마)	처마의 손상, 부후(누수), 충해, 생물서식 등 여부						
	지붕/기와	지붕 굴곡 변형						
		지붕마루, 기와 등 손상(파손·탈락) 및 누수 여부						
지하층	구조부	외벽, 기둥, 천장 등의 손상 여부						
	계단	계단 손상 및 성능유지 여부						
부대시설	담장·석축·옹벽	담장·석축·옹벽의 손상 여부						
	배수시설	마당 배수로 및 배수경사 적합 여부						
	그 밖의 시설물	대문 등의 손상 여부						
화재안전	소화설비	소화설비 설치 또는 소화기 비치 여부						
	환기	화재발생시 환기 가능 여부						

<sup>1</sup> 국가한옥센터는 2012년부터 전국 한옥분포조사를 실시 중으로 최종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한옥 여부 확인 및 등급 판별

표 2. 전통양식 부문 점검항목

구분	점검항목		점검내용	점검결과			비고 (결합부위)
				A	B	C	
전통 양식	구조형태	상부(지붕부)	지붕가구 및 처마형태 보존·유지(노출) 여부				
			슬레이트, 칼리강판, 방수천막, 광택도료 등의 사용(덧댐)으로 한옥 특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				
		하부(축부)	기둥·보 등 주요 목구조재 보존·유지(노출) 여부				
	외관유지	외벽(정면, 도로면)	외벽에 시멘트나 조적 등을 덧대어 한옥 특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				
			창틀에 이질적인 디자인, 색상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한옥 특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				
		관리 상태	마당 및 외부공간	마당의 상실, 과도한 차양 설치, 대지안의 공지 내 창고 등 무단 증축 여부			
			설비시설물	에어컨 실외기, 보일러, 프로판가스통 등이 외부로 드러나 외관이 훼손되었는지 여부			
			기타사항	담장, 대문 등의 외관이나 전반적인 관리상태			

### ■ 점검결과는 점검 이후 조치·관리가 용이하도록 부문별로 등급화하여 표시

- ‘안전성능’ 부문은 건축물의 안전점검 시 통용되는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의 안전등급 기준<sup>2</sup>을 준용
  - 문화재 정기조사는 조사자가 결합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법규상 등급평가 기준은 없음
- ‘전통양식’ 부문의 평가는 국가한옥센터의 한옥분포조사 등급 판별 기준을 준용
- 위 기준에 따라 세부점검항목별로 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부문별 종합등급을 매김
  - ‘안전성능’ 부문은 주요구조부 중 하나라도 D~E등급이면 종합등급도 D~E등급으로 평가함

표 3. 안전성능 부문의 평가기준

구분	상태
A (우수)	•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
B (양호)	•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
C (보통)	•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, 주요부재에 내구성,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
D (미흡)	•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
E (불량)	•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

※ 출처 : 「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200호), 제8장 안전등급 지정

<sup>2</sup>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주택법」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도 이를 준용



표 4. 전통양식 부문의 평가기준

구 분	한옥분포조사 등급판별 기준
A (우수)	• 격이 있는 한옥의 상/하부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벽/창호/보존상태 중 2개 이상을 만족시키는 한옥
B (양호)	• 격이 있는 한옥의 상/하부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벽/창호/보존상태 중 2개 미만을 만족시키는 한옥 - 일반 한옥의 하부구조를 가지고, 상부는 나무널덧댐방식(면조)일 경우
C (불량)	• 상/하부 구조체 중 하나가 없는 상태 • 겨우 한옥임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

※ 출처 : 건축도시공간연구소(2012) 「전국 한옥분포 현황조사-대구 및 나주편」, p.124, 한옥등급판정 매뉴얼

### 3. 한옥주택 시범점검 및 결과분석

#### 1) 시범점검의 개요

##### ■ 점검기준의 제안 및 점검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시범점검 시행

- 점검대상 : 총 45동(서울 경복궁 서측 구역 내 23동, 수원 화성 구역 내 22동)
  -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 또는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주택으로 자자체 수선 지원금을 받지 않은 한옥건축물로 한정하고, 거주자의 협조가 가능한 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점검
- 점검기간 : 2014년 9월 ~ 2014년 11월
- 점검자 : 건축사로서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 자격이 있거나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한옥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받은 자로 선정하고 1인이 1개 지역을 각각 담당
  - 한옥주택의 점검은 한옥의 구조, 형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 주택에 대한 성능수준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수행해야 함

#### 2) 점검결과 분석

##### ■ 종합적인 점검결과 서울 경복궁 서측은 안전성능에 부분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다수인 반면 수원 화성은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열악하고 일부는 긴급보수 필요

- 경복궁 서측의 점검대상 모두 ‘안전성능’의 중대한 결함은 없었으며 주요구조부가 일부 손상되거나 보조부재에 결함이 있는 C등급이 절반 이상으로 부분적인 보수·보강 필요(표5)
- 수원 화성의 ‘안전성능’ 부문 점검결과 총 22동 중 5동이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속히 보수·보강해야 하는 D등급이며, 점검대상의 절반 이상이 C~D등급으로 나타남(표6)

표 5. 점검결과 종합등급(서울 경복궁 서측)

등급	안전성능					
	A	B	C	D	E	합계
전통 양식	A	-	-	1	-	-
	B	-	4	7	-	-
	C	1	5	5	-	-
	합계	1	9	13	-	-

표 6. 점검결과 종합등급(수원 화성)

등급	안전성능					
	A	B	C	D	E	합계
전통 양식	A	-	1	-	-	-
	B	2	1	3	4	-
	C	1	4	5	1	-
	합계	3	6	8	5	-

- ‘전통양식’의 관리 상태는 두 지역 모두 B등급과 C등급이 각각 절반가량으로 전통적인 외관으로 부분적인 또는 전면적인 수선이 필요(표5, 표6)

#### ■ 공통적으로 결함이 가장 빈번한 부위는 창호이며 화재안전에 대한 대비가 취약

- ‘안전성능’ 부문에서 결함이 가장 많은 부위는 창호로 단열 및 기밀 성능이 떨어져 겨울 철 추위에 취약하며 가정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는 곳은 단 1동에 불과(그림11, 그림13)
  - 이외에도 지붕, 기둥, 벽체, 담장 등에서 크고 작은 결함이 빈번히 나타남

그림 1. 창호의 단열 및 기밀 성능 저하(서울)



그림 2. 기울어진 기둥 및 천장(서울)



그림 3. 벽체의 경미한 결함(수원)



그림 4. 담장의 파손 및 균열(수원)



## ■ 구조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부위는 지붕부

- 수원 화성 내 점검대상 총 22동 중 17동은 일부 기와가 파손되거나 기와 및 보토가 탈락했으며 이 중 5동은 지붕부가 심각하게 내려앉아 거주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(그림13)

그림 5. 지붕 회침부가 내려앉은 모습(수원)



그림 6. 추녀의 처짐과 지붕 손괴(수원)



## ■ ‘전통양식’의 훼손은 기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거주자의 임의적 개량 때문

- ‘전통양식’의 훼손은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외벽, 마당 및 외부공간, 창호, 지붕 등 모든 부분에서 고르게 발견되며 이는 한옥주택의 기능적인 결함을 보완하면서 발생
  - 외벽은 구조 및 단열 보강을 위해 조적을 덧대거나 실내공간 확보를 위해 확장
  - 협소한 대지에서 실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풍을 막기 위해 마당을 없애거나 대지내 공지에 창고나 보일러실을 임의로 축조
  - 창호는 단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목재에서 이질적인 흰색 PVC 또는 철재 창호로 교체
  - 지붕 상부는 방수를 위해 천막으로 덮거나 한식기와를 컬러강판 등으로 교체

그림 7. 조작으로 덧대어 확장한 외벽과 짧은 처마(서울)



그림 8. 마당을 내부공간으로 개조하고 천창을 낸 모습(서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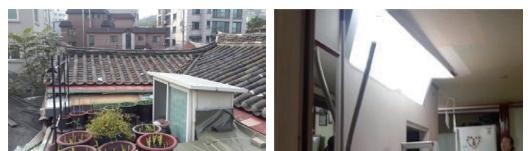


그림 9. 이질적인 색상과 재질의 창호(수원)



그림 10. 강판 및 천막으로 덮은 지붕(수원)



그림 11. 안전성능 부문의 결함항목(서울 경복궁 서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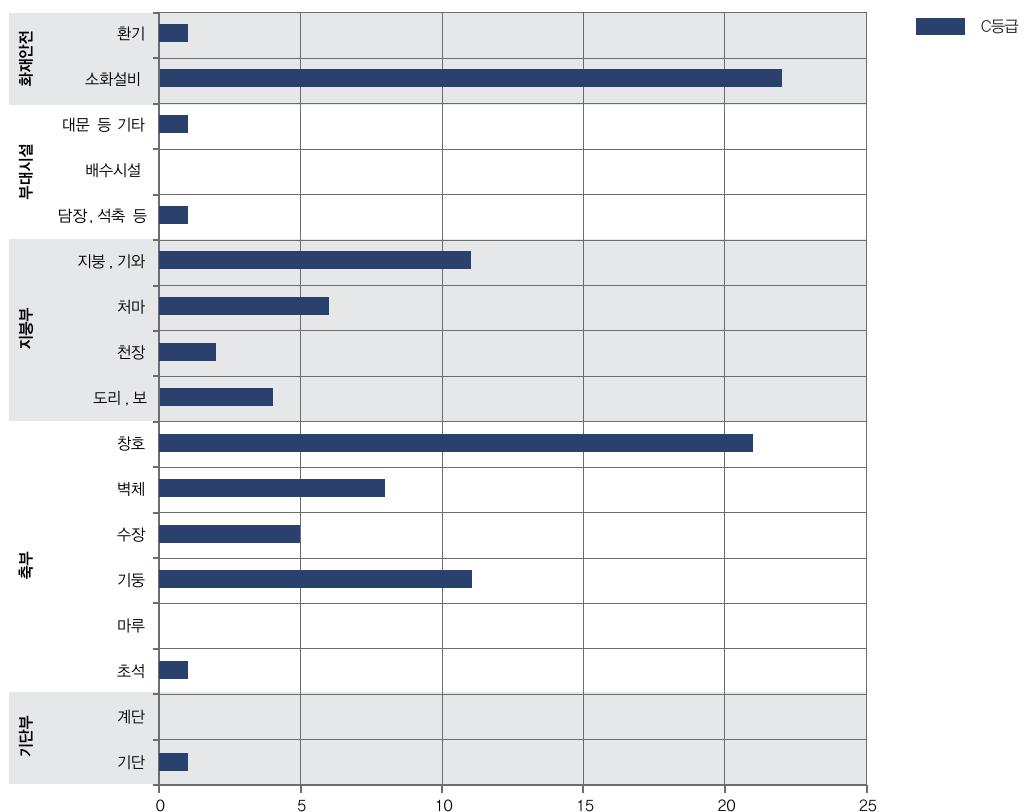


그림 12. 전통양식 부문의 결함항목(서울 경복궁 서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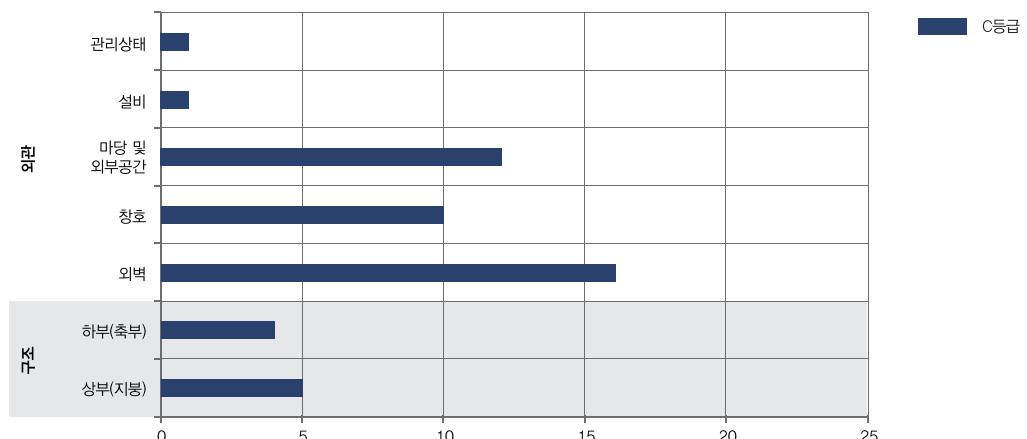


그림 13. 안전성능 부문의 결함항목(수원 화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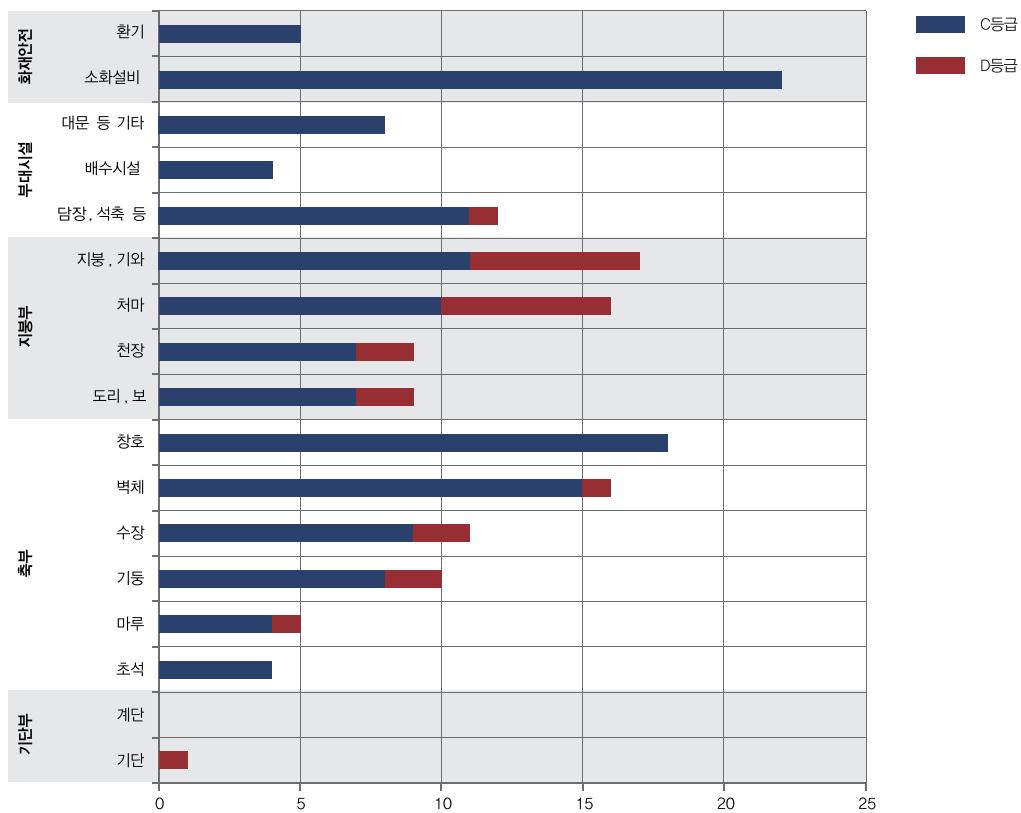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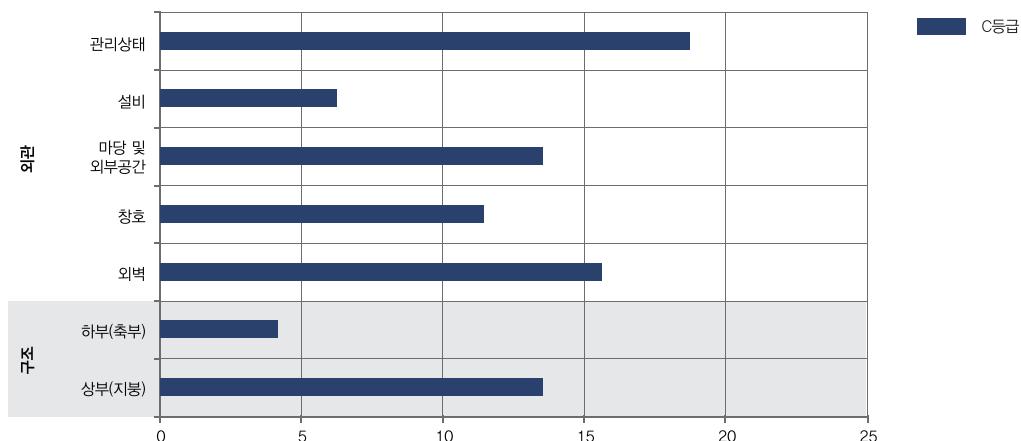


그림 14. 전통양식 부문의 결함항목(수원 화성)



### 3) 시범점검의 시사점

- 점검결과를 토대로 한옥주택의 등급별 관리 및 지역별 중점지원 방향을 설정할 필요
  - 한옥주택의 안전성능 및 전통양식의 관리 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조치방향을 설정하고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등급에 따라 필요한 수선을 하도록 지도 및 관리 필요
    - ‘안전성능’ C등급은 대부분 대수선 미만의 수선으로 개선이 가능하므로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창호 및 벽체 교체, 지붕 방수 및 기와 교체 등 부분적인 수선이 활성화되도록 기술지도 및 지원
    - ‘안전성능’ D등급은 거주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조속히 대수선 또는 개축하도록 지도하고 한옥지원조례에 의한 수선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
  - ‘전통양식’의 결함은 주로 ‘안전성능’의 결함에 기인하므로 거주자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고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수선 시 한옥의 특성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
  - 지역별로는 서울 경복궁 서측은 한옥주택의 안전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므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부분수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, 수원 화성의 경우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보수와 전면수선 위주의 지원 필요

표 7. 한옥주택 등급별 조치방향(예시)

등급		안전성능				
		A	B	C	D	E
전통 양식	A	정기점검 등 지속관리			사용금지 /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인 경우 개축·복원	
	B	한옥의 특성을 반영해 부분적인 거주 성능 개선 유도				
	C	대수선 또는 개축하고 전통적 외관으로 전면수선 유도				

- 화재안전에 대한 대비와 창호 및 지붕 수선에 대한 집중적 지원과 기술개발 필요
  - 지자체는 화재에 취약한 한옥의 특성상 한옥주택별로 소화기를 구비하도록 지원하고 거주자에게 소화기 사용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
  - 한옥주택에서 가장 결함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창호와 지붕으로 점검을 통해 지역의 수선 수요를 파악하고 창호의 교체나 지붕 수선을 일괄적·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
  - 창호와 지붕은 수선 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며, 특히 한식지붕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거주자의 수선비용 및 유지관리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

## 4. 한옥주택 점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

### ■ 시·도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를 위한 한옥주택 점검제도 시행

-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주택은 시·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는 등록대장에 기입하여 해당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
  -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달리 시·도 지정문화재의 경우 자치조례에 정기조사의 의무와 주기를 모두 명시하고 있는 곳은 5개 시·도에 불과하므로 비문화재인 우수건축자산의 정기점검은 의무화하지 않고 권장하는 것이 합리적임
- 한옥주택의 점검은 한옥의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우수건축자산이 아닌 경우에도 거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점검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- 한옥주택이 밀집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시 점검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해당구역 내 한옥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

표 8. 한옥주택 점검제도 도입의 근거(「한옥 등 건축자산법」 제12조 및 제19조)

구분	조항
우수건축자산	제12조(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) ① 생략 ② 시·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 ③ 시·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
건축자산진흥구역	제19조(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) 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1. 위치·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.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. <u>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</u> (이하 생략)

### ■ 지자체 한옥수선비용 지원과 연계하여 점검의 효과 제고

- 지자체는 지역별 한옥주택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획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수 있음
- 점검결과 부분적인 수선으로도 주거 성능 및 외관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한옥주택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수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 활성화
  - 일반적으로 '안전성능' C등급 이상, '전통양식' B등급 이상의 한옥주택은 부분적인 수선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

- 서울시와 같은 경우 부분적인 수선 수요가 있으나 조례에 따라 전면수선 후 5년경과 시에만 부분수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, 지자체 여건에 따라 부분수선에 대한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비용 조건을 마련
- 부분적인 수선에 대한 비용 지원 시 점검결과를 근거로 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필요

### ■ 원활한 점검 시행을 위한 지자체 내 중간지원조직 신설

- 한옥주택 점검의 기본 목적은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한옥의 상태를 알리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도·조언하기 위함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점검자 확보가 필수
- 한옥주택의 정기적인 점검과 거주자의 점검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, 필요시 수선 상담 및 긴급보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내 한옥 전문가가 포함된 중간지원조직 신설 필요
  - 중간지원조직은 한옥분포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설치
  - 문화재의 경우 ‘문화재 돌봄사업’을 통해 시·도별로 지자체 직속 또는 사회적 기업인 돌봄단체에 위탁하여 관할 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경미한 수리 등을 시행 중

문의 | tesjin@auri.re.kr



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
발행인 제해성  
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, 701  
전화 044-417-9600 팩스 044-417-9609 [www.hanokdb.kr](http://www.hanokdb.kr)